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0 발의연월일: 2024. 6. 18.

발 의 자:김용만·김병기·강준현

강훈식 · 김남근 · 이강일

이훈기 • 김혂정 • 박상혁

민병덕 · 조승래 · 이인영

이정문 · 한준호 · 서미화

백승아 • 이수진 • 박수현

이언주 · 정준호 · 민형배

오세희 • 박희승 • 김영환

양부남 • 김성환 • 조인철

이재관 • 이광희 • 조 국

최민희 • 이용우 • 위성락

전현희 · 문금주 의원

(35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적인 반부패기구 겸 옴부즈만 기구로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 속함. 그 역할에는 반부패 기능, 고충처리 기능, 행정심 판 기능을 포함함. 이처럼 국민권익위원회가 점차 확대되는 역할을 올바 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자체의 청렴도는 물론이고 기관장의 청렴 성이 필수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임. 그러나 고위공직 후보자의 청렴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음. 위원회형 중 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인 점, 해외의 반부패기구나 옴부즈만 기구의 수장이국회의 검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회인사청문을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1호),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9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"을 "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· ② (생 략)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 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통 신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정보원 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 금융위원회 위원장 · 국가인권 -----국가인권 위원회 위원장 · 고위공직자범 위원회 위원장 • 국민권익위원 죄수사처장 • 국세청장 • 검찰총 회 위원장----장 · 경찰청장 · 합동참모의장 · 한국은행 총재·특별감찰관 또 는 한국방송공사 사장(이하 "헌 법재판소재판관등"이라 한다) 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 우에 대통령·대통령당선인 또 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 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 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 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